

대구지방법원 2019. 5. 30 선고 2019가단6895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---

## 전 문

원고A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5. 30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5. 1. 17. 접수 제21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김은구

별지